

---

# 지역산업 R&D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대한 기본 이해

---

2021. 10. 27.

법무법인(유한) 다래  
변호사 박지환

# I .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지역산업 R&D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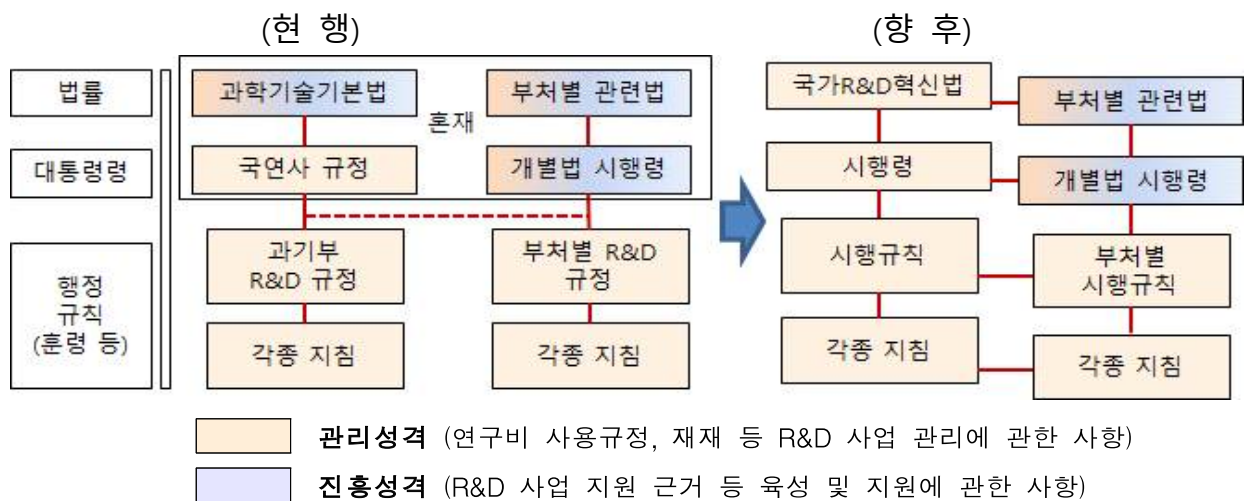
- 그 동안 국가 R&D사업은 부처별 개별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운용
  - '21.1.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국연법') 시행으로 부처별 개별법령은 '국연법' 범위 내에서 운용이 가능하도록 변경\*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우선 적용 근거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7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과 관련한 법령등이나 그에 따른 각종 시책을 운영**할 수 있다.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른 관련 법령체계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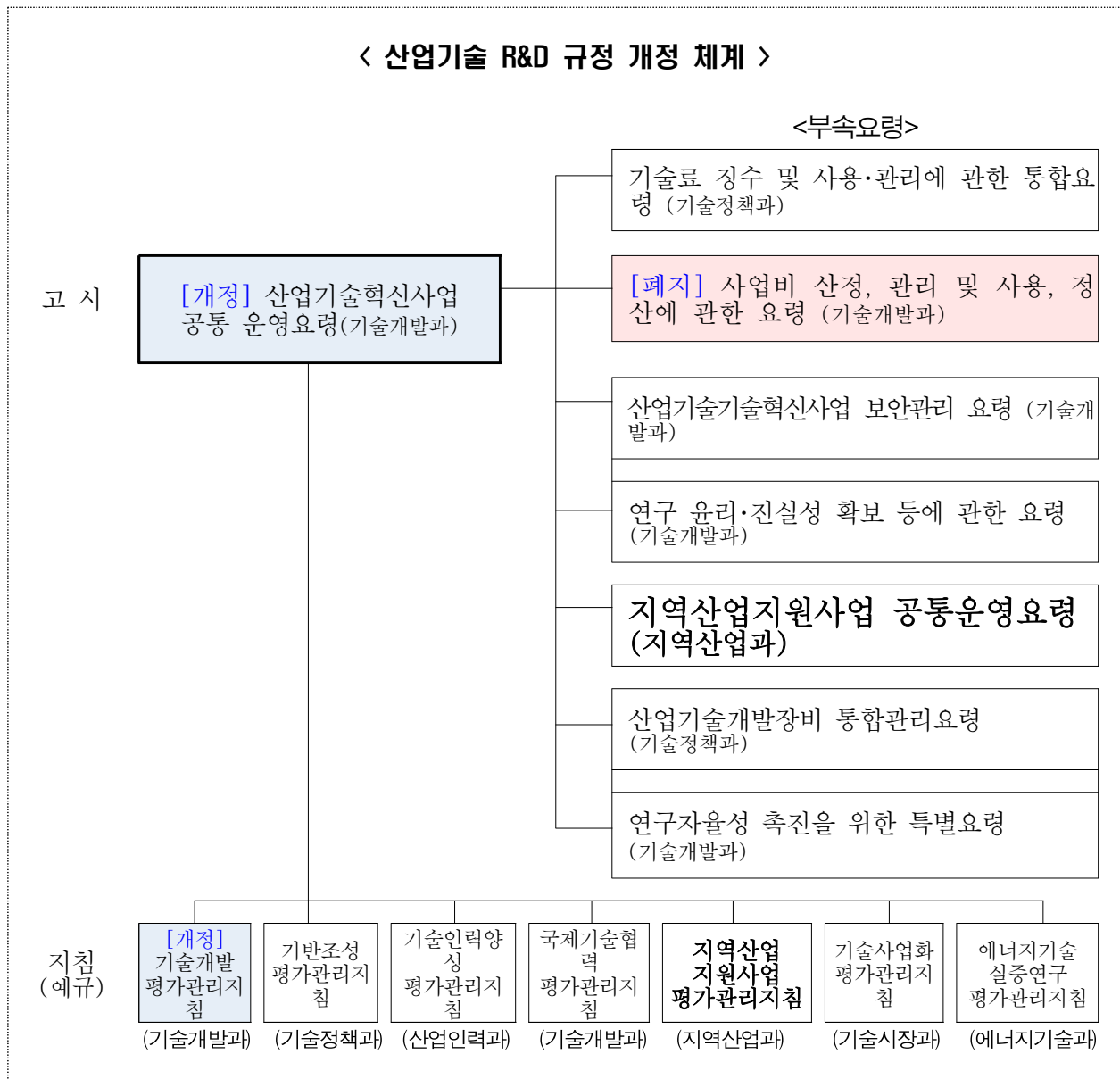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R&D 규정개정 내용

- **현행** 총 15개로, **요령 8개(고시)**와 **관리지침(예규) 7개**로 운용 중이며, **금번에 2개 규정을 개정하고 1개 규정\*은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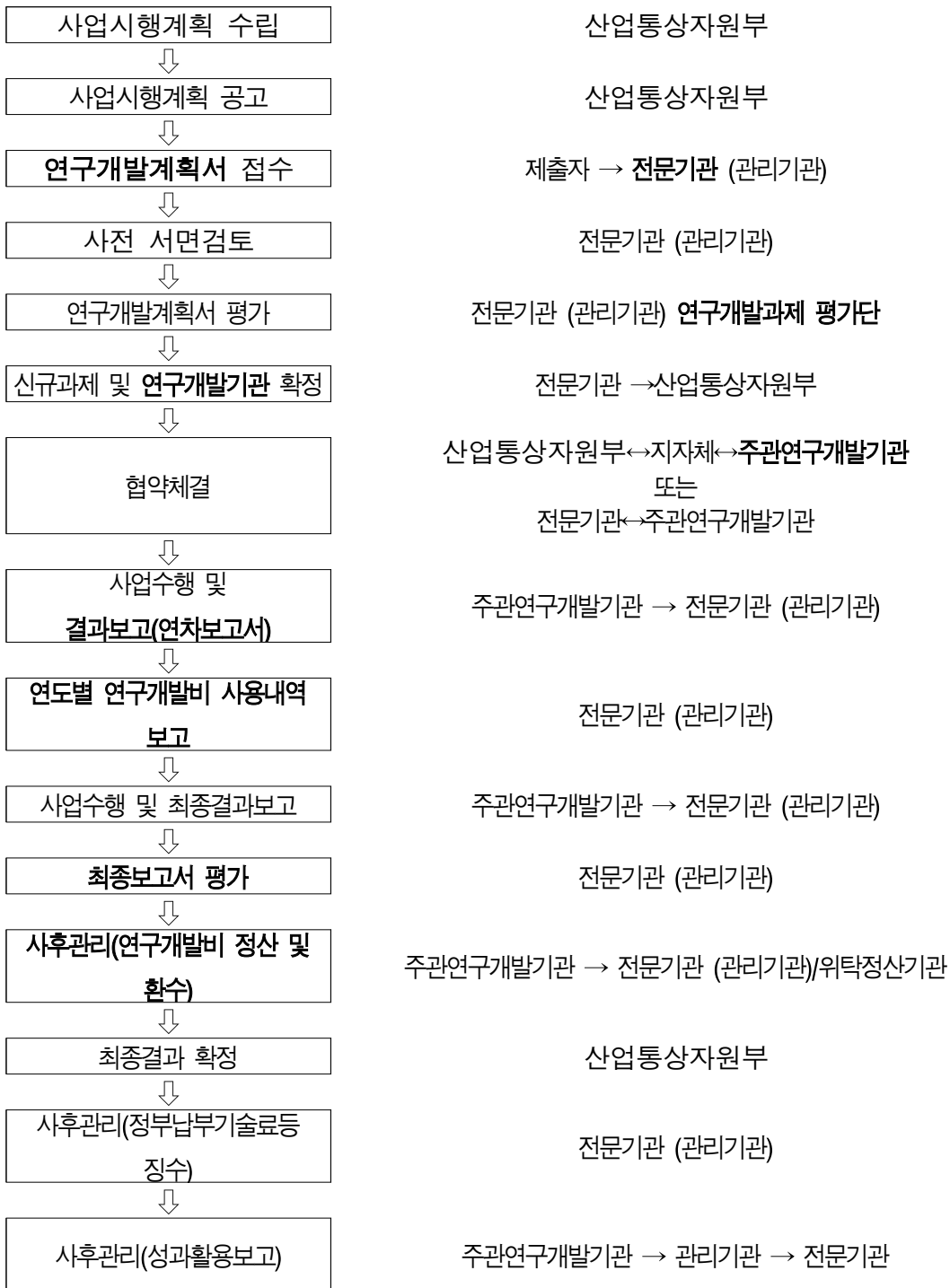
\* (국연법 제13조) 연구비 사용에 관한 과기부의 상세한 고시 제정에 따라 별도 운영의 필요성 부족(일부 부처재량 사항 규정은 공통 운영요령으로 이관)

- 산업기술 R&D 규정의 기본이 되는 ‘**공통운영요령**’과 ‘**평가관리지침**’ 규정 중 국연법과 상충되거나 부처 재량이 인정된 사항 중심 개정



## II. 지역산업 R&D 개정사항별 세부내용

□ 지역산업 지원사업 추진체계(예 :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



## 1. 주요 용어의 정립 ☞ 요령 및 지침 전반

- (국연법) 각 부처별로 달리 운영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용어를 통일적으로 규정
- (개정안) 기존 전담기관, 참여기관, 사업비, 정부출연금 등 용어를 국연법 규정에 정의된 용어로 변경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등 (변경 전)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및 시행령 등 (변경 후)
과제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	연구개발기관
전담기관	전문기관
성과	연구개발성과
과제 관련 정보	연구개발정보
행정지원	연구지원
-	<b>국가연구개발활동*</b>
사업계획서	연구개발계획서
주관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참여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연구책임자
참여기관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자
사업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
민간부담금**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비)
평가위원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연구시설·장비비
	재료비
평가위원회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전문위원회	제재처분평가단
기술료	기술료
	정부납부기술료등

\* (국가연구개발활동) 국가연구개발과 관련된 모든 활동

\*\* (민간부담금)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부담하는 매칭비용과 지자체 등 3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분리

## 2.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3책5공)

### □ (국연법) 종전과 달리 3책5공 제도의 적용을 완화하여 규정

- 기존 산업부 규정은 3책5공 적용을 강제하였으나, 국연법 시행령은 부처의 재량사항으로 완화
  - 3책5공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적용 제외 가능 범위를 확대

#### < 3책5공 적용시 제외대상 과제 >

공통 운영요령(20②)	국연법 시행령(64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개월 이내 종료되는 과제</li> <li>▪ 사전조사, 기획연구 등 과제</li> <li>▪ 세부과제 조정·목적의 과제</li> </ul>	<유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年3억원 이하 비영리-중기 공동과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연도 연구비 5천만원 이하 과제</li> </ul>	
<신 설>	<삭 제>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반구축, 인력양성, 출연연기본사업 등</li> <li>▪ 과기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과제</li> </ul>

### □ (개정안)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과 연구자의 참여기회 확대를 모두 고려해 위하여 3책5공 제한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규정

- 사업별 또는 과제별 3책5공 적용 제외 여부는 과제공고시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개선
  - 연구수행 전념을 저해하지 않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과제 등은 3책5공 적용제외 가능하도록 범위 확대
- 인건비계상률(기존 '참여율')은 연구참여자의 실질적 과제참여 유도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기존과 같이 10% 이상 참여 의무를 유지

\* 연구활동비, 연구수당의 부당수령, 부당 특허출원 등에 악용 소지

\* 과기부는 대학 등 비영리기관 소속 연구자의 다양한 정부 R&D 과제 참여 보장을 위하여 인건비계상률 0% 참여도 인정(혁신법 매뉴얼)

### 3. 선정평가 및 평가단(舊 평가위원회)

#### □ 선정평가 검토사항

- (국연법) 선정평가 시 반드시 검토(1호~2호)해야 하는 사항과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검토(3호~7호)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

1.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2.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3. 연구개발과제의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4.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근거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과의 부합성
5.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다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6. 연구개발과제 관련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
7. 연구개발과제의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

- (개정안) 기존 규정상 달리 정하고 있는 조항은 국연법에 맞게 정비하고 그 외 산업R&D 특성을 반영해야하는 사항(안전과제 등) 유지

#### □ 선정평가 등 평가절차의 변경

- (국연법) 선정평가의 결과를 부처가 확정된 이후 해당 확정된 결과를 연구자에게 통보하고 그 이후 평가결과의 이의신청 처리 실시
- (개정안) 국연법 절차에 따라 선정평가 절차를 변경
  - (기존) 결과통보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결과 확정 → 협약
  - (변경) 결과확정 → 결과통보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협약

#### □ 평가단 구성 ☞ 요령 제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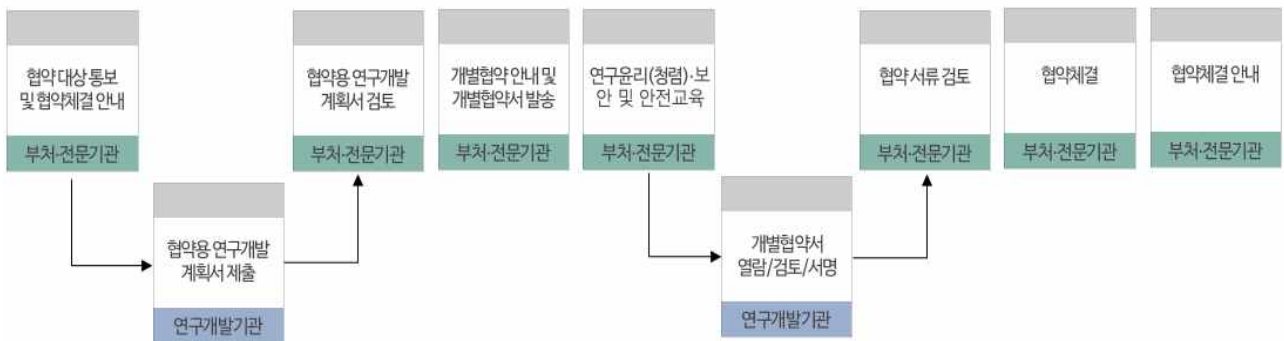
- (국연법) 평가위원의 제척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PD, 연구기관과 동일한 기관 소속 전문가 등이 평가단에 참여 가능
- (개정안) 공정성을 고려해 기존의 엄격한 평가단 구성 조건을 유지하되,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PD, 동일소속기관 전문가 등 허용
  - \* 초고난도 과제 등 관련 전문가가 한정된 연구개발과제

## 4. 협약의 체결 · 변경 · 해약

### □ 협약의 체결 · 정산 · 이월

- (국연법) 연구자 편의를 위하여 연차협약 폐지, 연차평가·정산 폐지 및 협약서식 등의 통일적 규율 마련
  - (연차·단계협약 폐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며, 최초 과제 선정 단계에서만 1회 협약 체결을 원칙
    - \* 최장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혁신법 제12조①), 단계 구분이 필요한 경우 협약서에 단계구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
  - (협약 체결일) 선정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협약 원칙
    - \* 선정결과 통보일에 해당하는 월의 첫날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로 지정 가능
  - (표준협약서식) 연구개발과제의 표준 협약서식은 국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을 준용

#### [협약 체결 절차]



- (개정안) 연차·단계협약, 연차평가·정산 등을 폐지하되 과제 관리 필요성을 고려, 최소한의 진도점검 등 실시
  - (진도점검) 차년도 연구비 지급 전 연차보고서를 기반으로 서면점검을 실시하고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등 실시
  - (연구비 점검) RCMS를 활용하여 분기별로 상시점검하고, 연구비



유용 의심 또는 서류 미흡 사항 발생 시 현장점검 등 실시

□ **협약의 변경 · 중단**

① **중요한 협약의 변경**

- (국연법) 기존 전문기관의 승인 필요 → 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간 협의를 통해 변경토록 규정\*
  - \* (대상) 연구개발기관, 최종목표,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의 변경 단, 연구개발비는 과기부 연구비 고시를 통해 전문기관의 승인사항으로 위임
- (개정안) 국연법을 반영하여 목표변경 등은 승인 → 협의로 변경하고, 간접비 증액, 기업 현금인건비 변경 등의 승인사항 신설

분류	중요한 협약의 변경	
	기존	변경
기관, 책임자	· 주관기관·공동기관의 변경 · 주관책임자·공동책임자 변경	좌동
	* 유연컨소시엄 과제는 승인 없이 주관이 공동기관에 대해 변경 가능	좌동
연구 목표 및 기간	· 최종목표의 변경 · 연구기간 연장은 연차별 6개월 이내에서 승인받을 경우 가능	좌동
	* R&D샌드박스, 대형통합형과제는 승인 없이 목표 변경 가능	좌동
연구비	· 연구개발비 총액의 변경 · 간접비 증액 · <신설> · 3,000만원 이상 시설장비비 변경 · 직접비 연차 이월 · <신설>	· 연구개발비 총액 변경 · 단계 내 간접비 증액 · 기업의 현금 인건비 총액 변경 · 3,000만원 이상 시설장비비 변경 · 직접비 단계 이월(현물, 연구수당 제외) · 단계별 연구수당 총액 내에서 해당연도 인건비의 증액에 따른 해당연도 연구수당 증액만 인정*
연구 내용	· 기반조성사업으로 구축된 장비를 전용공간 이외에 설치할 경우 · 에너지실증 설비를 전용공간 이외에 설치할 경우	좌동

- \* 국연법상 연차정산 폐지로 연구수당도 단계별 정산으로 변경되어, 과기부는 연차 구분 없이 단계 내 수당 지급을 허용(국연법 매뉴얼)
- \* 연구수당은 과제를 성실하고 우수하게 수행한 연구자에 지급하는 격려금으로서 연차 종료 후 기여도에 따라 지급 원칙 유지가 필요하며, 정당한 사유(연도별 참여연구원 증가)가 없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상 연도별 연구수당 계상액 초과 불인정

## ② 경미한 협약의 변경

- (국연법)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이나 단계·특별평가 결과에 따른 변경은 연구자가 전문기관에 통보(시스템 등록)로 변경
- (개정안) 과제의 추진방법 변경, 직접비 내 항목간 변경, 평가에 따른 과제 내용 변경 등 3개 사항(국연법 신설)은 통보로 같음하도록 반영

[통합정보시스템 상 협약변경의 상호협의/승인/통보사항 세부기준]

구분	세부 항목	승인/통보	관련 법령
기관변경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상호협의 (승인)	법 제11조제2항
	② 공동연구개발기관	상호협의 (승인)	법 제11조제2항
	③ 위탁연구개발기관	상호협의 (승인)	법 제11조제2항
	④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기관 변경	통보	영 제14조제3항제4호
	⑤ 연구개발기관 정보변경 (기관명칭, 기관장 등)	통보	영 제14조제3항제4호
인력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상호협의 (승인)	법 제11조제2항
	②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상호협의 (승인)	법 제11조제2항

변경		③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상호협의를 (승인)	법 제11조제2항
----	--	----------------	---------------	-----------

구분		세부 항목	승인/ 통보	관련 법령
	연구자 (연구책임자 제외)	④ 연구자 변경 (연구책임자 제외)	통보	영 제14조제2항제2호
	연구자 외 변경	⑤ 연구지원인력 등	통보	영 제14조제2항제4호
	연구개발기관 외 인력	⑥ 연구개발기관기관이 아닌 관계기관 인력변경	통보	영 제14조제2항제4호
연구개발 목표 · 내용	연구개발 목표	① 최종 /단계 목표변경	상호협의를 (승인)	법 제11조제2항
		② 성과 및 성능 목표	상호협의를 (승인)	법 제11조제2항
	연구개발 내용	① 추진전략, 방법 등	통보	영 제14조제2항제1호
		② 기술기여도	상호협의를 (승인)	영 제39조제2항
연구 개발 비	연구개발비 총액	① 연구개발비 총액변경	승인	연구비 고시 제73조
		② 연구개발기관 부담금변경 (현금 /현물간 변경 포함)	승인	연구비 고시 제73조
	인건비	①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 변경	승인	연구비 고시 제73조
	위탁 연구개발비	① 위탁연구개발비 20%이상 증액	승인	연구비 고시 제73조
	국제공동연구 비	① 계획대비 변경	승인	연구비 고시 제73조
	연구시설 장비비	① 연구시설장비비 변경	승인	연구비 고시 제73조
		② 보유현황 변경	통보	(현물과 연계)
		③ 설치·운영 장소변경 (연구시설장비 구축 목적 과제)	승인	연구비 고시 제73조
	연구수당	① 연구수당 감액	통보	영 제14조제2항제3호 연구비 고시 제26조제2항
		② 연구수당 증액	불가	
간접비	① 간접비 감액	통보	영 제14조제2항제3호	
	② 간접비 증액	승인		

				연구비 고시 제73조
	연구개발비 변경	①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 ※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연구비 항목별 세부내역의 변경은 통보 없이 자율 변경 (단, 승인사항은 제외)	통보	영 제14조제2항제3호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변경	①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예산의 변경	승인	(평가 시 활용)
	연구개발비 계좌	① 연구개발비 지급계좌 변경	통보	영 제14조제2항제4호
연구 기간	연구개발기 간 변경	① 전체 /단계 연구개발기간 변경	상호협의 (승인)	법 제11조제2항

## □ 협약의 해약

- (국연법) 협약해약 요건을 부정행위, 참여제한, 연구환경 변화, 계속 수행 불가능\*, 주관기관 요청, 협약 위배로 한정(열거규정)
  - \* 산업부가 규정한 기업 자본전액잠식 등 사전지원제외에 준하는 사유는 미포함 되거나 상세한 사유 제시가 부족
- 또한, 특별평가 또는 단계평가를 통해 중단된 과제에 대해서만 협약의 해약이 가능
- (개정안) 국연법에 맞춰 해약 사유를 정비하되, '계속 수행 불가능', '협약위배 사항'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규정
  - 또한, 협약의 해약 시 평가단을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평가단으로 하여금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지 검토하도록 개선

국연법(15①)	공통운영요령(28①, 29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과제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과제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자가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중단을 요청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자가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중단을 요청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협약에 따른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기관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투자유치 사업에서 투자계약이 변경, 무효화, 양도된 경우 또는 투자계약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거나 관련 기관의 안전조치 지적을 받고도 미조치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기관 등에서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지원제외 사유에 준하는 재정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li> </ul>

## 5. 연구개발과제 보고 및 평가

### □ 연차·단계·최종 보고서 제출

- (국연법) 연차평가 폐지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연구수행 확인을 위한 연차 보고서 제출 의무\*와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제출 의무 유지
  - 연차보고서(연차종료일), 단계보고서(단계종료일), 최종보고서(종료 후 60일) 제출일자를 구체화
  - \* 다만, 산업부와 달리 연차·단계보고서 제출일을 과제 종료일로 규정함에 따라 전문기관의 점검 또는 평가 지연으로 연구비 지급이 늦어지는 연구자 불편 발생 우려
- (개정안) 기존의 연차보고서(연차종료 전 30일), 단계보고서(단계종료 전 30일) 제출일을 유지\*
  - \* 연구자의 연구비 사용이 저해되지 않도록 연차·단계보고서 사전검토를 통해 차년도(차단계) 시작일에 맞춰 연구비 지급을 도모
  - 보고서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연차·단계보고서를 국연법상 종료일까지 재제출이 가능케 함으로써 국연법 규정 준수

### □ 연차·단계·특별평가

- (국연법) 일괄협약 체결 원칙에 따라 연차평가·정산제도는 폐지하고 단계평가·정산을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 발생시 특별평가를 실시
  - (단계평가) 평가결과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미흡한 경우에 한해 중단
  - \*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의 중단·변경, 연구개발비의 증액 및 감액 가능
  - (특별평가) 부정행위, 참여제한 등 문제과제의 처리 뿐만 아니라 목표 조기달성 등 협약의 변경·중단이 필요한 모든 사유 발생시 개최
- (개정안) 혁신법령 상 연차평가 폐지에 따라 공통요령 상 연차평가 규정 폐지

- \* 다만, 기업 R&D 특성을 고려해 연차보고서를 통한 연차별 진도점검은 계속 실시 (자본잠식, 연차별 과제목표 달성 미흡 등 발생 시 실태조사 및 특별평가 실시)
- 연차별 평가·정산 폐지에 따라 **단계평가·정산을 실시**하고, 단계 내 연차별 연구비 이월이 가능하도록 개정(기존 연차단위→단계단위)
- \* RCMS 분기별 실시간 정산을 통해 연구개발비 사용 실시간 모니터링
- **목표를 조기 달성한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조기종료'로 판정**하되, 필요시\* **협약변경(최종목표 변경)의 형식으로 계속 지원**
- \* 주관기관이 해당 과제의 과제기간 내에 후속연구계획을 제출하면 평가를 통해 그 타당성을 검토

< 국연법 상 특별평가 요건 >

구분	사유
<b>전문기관의 장이 특별평가 실시</b>	①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②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③ 연구개발 환경 변경으로 과제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b>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특별평가 신청</b>	① 연구개발 환경 변경으로 과제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목표 조기 달성한 경우 ②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평가결과의 후속조치 폐지**

- (국연법) 과제의 최종 평가등급이 우수할 경우 후속과제를 지원할 수 있으며, 기존과제의 연구비 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회수가 원칙
- \* 산업부는 최종평가 '우수'의 경우 **연구비 잔액을 미회수**(후속연구 재투자), '중단(성실)'의 경우 수행보고서·논문·특허출원 및 표준화를 위해 연구비 추가지원(출연금 10%이내) 가능
- (개정안) 과제등급과 관련없이 **종료 또는 중단 시 연구비를 회수**하고 '우수' 등급 과제는 후속과제 연계 근거 마련

## 6. 연구윤리 확보

### □ 연구윤리 확보 및 개념의 확장

- (국연법) 연구윤리의 범위 확장\* , 연구현장의 자율적인 가치 정립을 위한 연구윤리 확보 책임\*\* 명확화

\* 종전 연구부정(위·변조·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등) 방지 → 연구진실성 확보 +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 이해 충돌 관리 + 인간·동물연구 윤리 +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등

\*\* 연구부정 등 부정행위의 검증조치에 관한 자체규정 마련의무(필요시 전문기관 조사)

### ○ (국연법)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3.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4.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개정안) 기존의 원칙적 규정을 포함하여 국연법 상 관련 규정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



## 7. 제재처분

### □ 제재처분의 구체적 절차 수립



- (혁신법) 부처별 상이한 제재처분(참여제한, 제재부가금) 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일원화하는 동시에 처분내용을 강화
  - (처분주체) 제재처분의 주체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한정하고, 전문기관은 처분집행 및 징수금 수납·독촉·강제징수 등 업무 지원
    - \* 산촉법 : 참여제한·환수금 처분은 전담기관, 제재부가금 처분은 산업부
  - (처분내용) 위반행위에 대하여 참여제한·환수금·제재부가금 등 제재처분 3종을 처분대상자에 일괄하여 동시 처분 가능
    - \* 산촉법 : 참여제한·환수금 先처분 (전담기관) + 제재부가금 後처분 (산업부)
  - (제재부가금) 모든 문제과제에 환수금 대신 제재부가금 부과, 환수금은 부정사용 과제에 대해서만 부과
    - \* 산촉법 : 제재부가금은 부정사용에 대해서만 가능
  - (처분공개) 참여제한 처분기한 5년이상 또는 제재부가금이 이미 지급한 정부 출연금의 3배 이상인 경우 처분내용 공개 신설
  - (절차강화) 제재 처분내용을 심의·검토하는 제재처분평가단과 이의신청을 담당하는 연구자권익보호 위원회(과기부) 신설
    - \* 제재처분 사전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산업부 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과기부)로 재검토 요청(희망시) 절차 신설
  - (제재처분 시효제도 도입) 참여제한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로부

## 터 10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음

- (개정안) 기존 규정 중 국연법 규정과 달리 규정된 규정을 개선하고 새로이 규정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

### ○ (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은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또는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참여제한 처분기준(제5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가중기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제2호가목2) 및 4)에 해당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제외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10년을 한도로** 한다.

- 1)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중 학생인건비 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연구수당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 2)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참여제한 처분을 받는 경우.**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3)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감경기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제2호가목2) 및 4)에 해당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제외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검증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이 경우 감경되는 참여제한은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참여제한으로 한정한다.
- 2)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합산기준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과제별로 각각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목 및 나목의 가중·감경기준을 적용한 후 산출된 참여제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10년을 한도로 한다.

## 2. 개별기준

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는 제외한다)에 대한 위반행위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참여제한 기간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1호	2년
2)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6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할 때까지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2호	2년
4)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5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때까지
5)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가)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나)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법 제32조제1항제3호	3년  3년

한 행위를 한 경우		
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한 경우		2년
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국내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마)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국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하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사)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행위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2년
6)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4호	2년

나.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	참여제한 기간
1)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	6개월 이상 2년 이내
2)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2년 초과 4년 이내

3)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4년 초과 5년 이내
4)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5년 초과 7년 이내
5)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초과인 경우	7년 초과 10년 이내

제재부가금 처분기준(제59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가중기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배를 한도로 한다.

- 1)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중 학생인건비 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연구수당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 2)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액 중 가장 큰 제재부가금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감경기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검증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이 경우 감경되는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액으로 한정한다.
- 2)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

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합산기준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별로 각각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목 및 나목의 가중·감경기준을 적용한 후 산출된 제재부가금 부과액을 모두 합산한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배를 한도로 한다.

2. 개별기준

가.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제재부가금

1)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는 제외한다)에 대한 위반행위별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제재부가금 부과액
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1호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
나)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2호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
다)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	법 제32조제1항제3호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



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를 한 경우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국내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국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15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15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25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p>(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행위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p>		<p>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p>
<p>라)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p>	<p>법 제32조제1항제4호</p>	<p>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p>

2)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재제부가금 부과액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	재제부가금 부과액
<p>가)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p>	<p>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p>
<p>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p>	<p>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p>
<p>다)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p>	<p>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p>

라)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1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50)
마)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초과인 경우	7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0분의 200)

**나. 연구책임자·연구자·연구지원인력 및 연구개발기관 소속임직원에 대한 제재부가금**

1)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는 제외한다)에 대한 위반행위별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제재부가금 부과액
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1호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
나)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2호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
다)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	법 제32조제1항제3호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

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를 한 경우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국내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국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행위를 한 경우

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3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3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5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p>(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행위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p>		<p>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p> <p>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p>
<p>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p>	<p>법 제32조제1항제4호</p>	<p>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p>

2)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서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재제부가금 부과액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	재제부가금 부과액
<p>가)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p>	<p>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p>
<p>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p>	<p>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p>
<p>다)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p>	<p>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p>

<p>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p>	<p>사용한 <b>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b></p>
<p>라)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p>	<p>1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b>100분의 150</b>)</p>
<p>마)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초과인 경우</p>	<p>7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b>100분의 200</b>)</p>

## 8.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 제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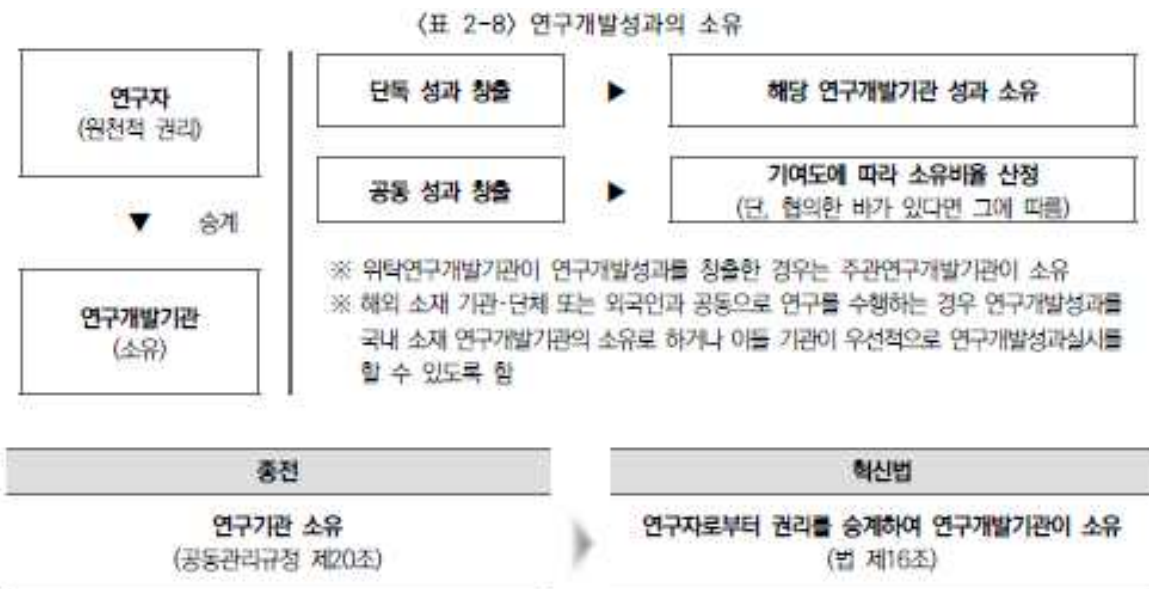
### ①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 (국연법) 기존 규정과 같이 연구개발기관 소유를 원칙으로 규정 하되, 연구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임을 명시

\* 「발명진흥법」상 관련 규정(연구자로부터 소유권승계 명시 필요)과 상충되는 사항을 명확히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이 명시

- 이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는 원칙적으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 (법제16조①)하되, 예외적으로 ‘참여기관 공동소유’ 또는 ‘연구자’(제16조②)\*

\* (공동소유) 공동으로 연구성과 창출 시 가능(영제32조①)  
(연구자 소유) 연구기관이 지재권에 대한 소유권 포기 시 가능(영제34조④)



○ (개정안) 연구성과의 연구개발기관 소유 원칙, 예외 사항, 국가 소유 요건 등을 국연법 규정과 같이 신설 또는 개정(요령 제35조)

- 지재권 포기 시 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포기 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우선 양도 규정은 새로이 명시(요령 제35조⑦제4호)

## ② 연구개발성과의 처분(양도)

- (국연법) 연구성과는 성과를 창출한 연구기관 소유로서 직접 실시, 실시계약 체결, 양도 등의 형태를 불문한 자유로운 처분 권리를 보장
  - 양도 시 부처 승인(국연사 제21⑤), 기술료 납부 전 처분 금지(국연사 제20조②) 폐지하여 기술료 납부 이전에도 소유권 양도 등 가능
- (개정안) 정부기술료 납부 등과 연계한 소유권 양도 권리 제한\*은 폐지하되 최종평가 전 임의 처분 금지\*\*(요령 제35⑧)는 유지\*\*\*
  - \* 기존 공통운영요령은 최종평가 이전 또는 기술료 납부 이전 처분 권리를 제한, 처분 시 참여·실시기관과 협의 의무
  - \*\* 단,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인정
  - \*\*\* (국연법 제12조제2항) 단계/최종평가 시 연구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을 평가단에서 평가하도록 규정

## ③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 (국연법) 연구성과 소유기관에게 연구성과의 적극적 활용 의무를 부과(시행령 제34①)
  - 기존, 참여기관의 무조건적인 우선 실시 권리(이외 기관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 가능) 조항(국연사 제21②) 삭제
    - \* 일반공개과제, 공동소유자 동의 경우, 실시 또는 기술료납부가 없는 경우, 실시계약 체결후 1년 이내 시작없는 경우, 부처 필요시, 실시 의사가 없는 경우
  - 참여기관은 연구성과를 창출하였거나, 자기 소유의 성과 실시에 다른 참여기관 소유의 성과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우선권
- (개정안)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참여기관의 우선 실시 권리 및 실시 의무\* 규정은 폐지
  - \* (공통운영요령 제37조의2①) 참여기업이 있는 과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참여기업이 실시기관이 됨



- 참여기관의 예외적 우선 실시 조항을 신설하고 실시계약 체결시 중소기업과 국내기업을 우선하도록 한 규정은 유지(제37조의2③,⑤,⑥)

#### ④ 기술료의 징수

- (국연법) 연구성과 소유기관은 실시계약에 따른 기술료(일반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실시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의무\*

\* 국가안보, 사회경제적 필요, 경영악화, 부처 인정시 비징수 가능

- (개정안) 정부납부기술료\*의 정의(요령 제2조24의2호)를 명확히 하고 정부납부기술료 비징수 과제의 요건 등은 기술료 요령으로 이관

\* ① 연구개발기관이 제3자로부터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하는 기술료의 일부,  
②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

#### ○ (국연법 시행령)

제38조(기술료의 납부)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서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2.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

수익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과 납부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납부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납부액 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9조(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 ①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2.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연구개발성  
 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  
 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경제적 상황 또는 기술 시장의 급격한 환경 변  
 화로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술기여도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술기여도를 변경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  
 라 산정한 납부액과 납부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  
 게 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  
 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  
 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또는 기술료등납  
 부의무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납부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납부액 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9. 연구수행 제도 개선

###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부실위험으로 인한 사전지원제외 개선

- (현황) 연구개발과제 접수 후 컨소시엄 내 1개 기관의 부실위험이 발생하더라도 선정평가 없이 해당 과제를 사전지원 제외 중
- (문제점) 이에 따라 과제 내에서 다수개의 연구개발기관이 사전에 연구를 충실히 준비하더라도 사전 제외되는 불평등을 초래
- (개정안) 과제 내에서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사전지원제외되더라도 접수마감일 이후 10일전 또는 선정평가일 전까지 해당 기관과 역할을 대체하여 컨소시엄을 보완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하여 심의

\*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사전지원제외에 해당할 경우 대체 불가

### □ 과제수행 중 주관연구개발기관 부실위험 시 교체 허용토록 개선

- (현황) 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도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재정적 위험 발생 시 기관 변경이 불가
- (문제점)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 개발정도가 양호한 기술을 확보 하더라도 재정위험에 따른 과제 중단으로 해당 기술이 사장되어 그간 투입된 출연금이 매몰될 우려
- (개정안) 계속 수행중인 과제이더라도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컨소시엄에서 적절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변경을 요청할 기회를 부여하고 전문기관이 협약의 변경을 준용하여 심의

# 감사합니다.

본 자료는 충북지역사업평가단 세미나 자료로 작성된 것으로,  
발표자의 허락없이 복제 등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박지환  
법무법인(유한) 다래  
서울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132, 한독약품빌딩 9층  
[lawspace@daraelaw.co.kr](mailto:lawspace@daraelaw.co.kr), 02-3475-7700